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와 발언 기회에 대한 공고 및 비상규칙 효력연장에 관한 공고

HRA의 제안 사항 노숙을 방지하고 쉼터 가족을 안정적인 거주지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우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HRA)은 다음과 같이 뉴욕 시 규정 표제 68, 제 7 및 8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HRA에게 (a)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가족의 경우 HRA가 상기 규정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 수준에서는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LINC I, LINC II, LINC III, LINC IV, LINC V 및 CITYFEPS 프로그램의 최대 임대료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b)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에 DHS 쉼터로 사용되어온 부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 지급금 1년치를 임대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며, (2) 임산부뿐만 구성된 가족에게도 LINC I, II, III 및 VI 적용을 확대하며, (3)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시한을 연장하며, (4) 임대료에 난방 및 온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5) LINC 임대료 지원이 적용될 어떠한 거주지도 뉴욕 시내에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 HRA는 또한 본 규칙에 따라 표제 68, 제 9장의 규정이 제 7장 및 8장에 통합될 것이므로 제 9장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청회 개최 시간 및 장소는? HRA는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2015년 10월 6일 오후 1시에 맨해튼 다운타운에 위치한 Spector Hall, 22 Reade Street 1층에서 개최됩니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의 방법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칙 웹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를 통해 HRA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의견을 이메일(constituentaffairs@hra.nyc.gov)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제목에 "LINC/CITYFEPS Proposed Rule"을 포함해 주십시오.
- **우편.** 의견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The Office of Constituent Services
150 Greenwich Street, 31st Floor
New York, NY 10007

- **팩스.** 팩스번호 212-331-5998로 의견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팩스 표지에 "LINC/CITYFEPS Proposed Rule"을 포함해 주십시오.
- **공청회 출석을 통한 의견 개진.** 공청회에서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청회 시작 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대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의견서 제출 시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15년 10월 6일입니다.

공청회 참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청회에서 통역이 필요하거나 장애에 따른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2015년 9월 29일 이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929-221-518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917-639-0296번으로 팩스, 혹은 다음 주소로 우편을 이용해 연락해 주십시오.

LINC/CITYFEPS Rental Assistance Programs
150 Greenwich Street, 36th Floor
New York, NY 10007
Attention: Public Hearing

본 규칙안에 대해 개선된 의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http://rules.cityofnewyork.us/>를 방문하시어 규칙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며칠 내에 규칙안에 관해 온라인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의 사본, 서면 의견서 사본 및 공청회에서 개선된 구두 의견에 대한 요약서가 HRA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본 HRA 규칙 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뉴욕 주 사회복지 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섹션 34, 56, 61, 62, 77, 및 131와 뉴욕 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섹션 603 및 1043에 근거하여 HRA는 본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본 규칙안에 대한 주정부의 승인이 계류 중입니다. HRA가 최신 입법 의안을 발표할 당시 이 규칙안은 입안되지 않았으므로 HRA의 최신 입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HRA의 규칙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규칙은 뉴욕 시 규칙 표제 6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정 과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HRA는 규칙 제정 또는 개정 시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긴급 규칙의 효력연장에 대한 공고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i)(2)에 의거하여 2015년 6월 24일 공포된, HRA에게 특정 가구를 위해 LINC I, LINC II, LINC III, LINC IV, LINC V 및 CITYFEP 프로그램의 최대 임대료 한도를 증가시키고, 특정 임대주에게 1년치의 임대료 보조 지급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규칙이 이로써 2015년 10월 22일로 연장되었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연장된 60일의 기간은 HRA가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e)에 명시된 공개적인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절차를 완료 후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최종 규칙을 채택하는 데 필요합니다.

근거 및 목적의 진술

노숙을 방지하고 해당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장의 우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또한 뉴욕 시 노숙인 서비스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국장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뉴욕 시 인적자원국(HRA) 국장(Commissioner)은 지역사회내 거주(Living in Communities,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및 뉴욕 시 가정 추방 방지 지원금(City Family Eviction Prevention Supplement) 프로그램 및 뉴욕 시 가족 쉼터 퇴소 지원(City Family Exit Plan Supplement, CITYFEPS)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변경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HRA는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제 7장 및 8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가족일 경우 HRA가 상기 규정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 수준에서는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LINC I, LINC II, LINC III, LINC IV, LINC V 및 CITYFEPS 프로그램의 최대 임대료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권한을 HRA에 허용. (규칙안의 섹션 4, 5, 11 및 18 참조) 현재, 제 7장 및 8장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HRA가 임대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급 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규칙의 수정안은 HRA가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현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DHS 쉼터로 사용되었던 유닛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에게 계약 체결 직전에 1년치의 임대료 지원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HRA에 허가. (규칙안의 섹션 4, 6, 11 및 17 참조) 현재, 제 7장 및 8장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HRA가 이러한 지급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급 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RA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선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현재 DHS 쉼터로 사용 중인 유닛에 대해 임대주들이 LINC 및 CITYFEPS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유인책 역할을 하게 되어, DHS 쉼터에 거주 중인 가구의 수를 감소시키면서 현재 많이 부족한 저렴한 거주지를 뉴욕 시 주택 시장으로 되돌려보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가족들에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해당 가족들이 저렴한 아파트를 찾을 때 다른 쉼터로 이주할 필요도 없앨 수 있습니다.
- 현재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만 제한된 LINC I, II, III 및 VI를 임산부에게로 확대적용. (규칙안의 섹션 1-3, 7 및 14 참조) 본 수정안은 임산부 여성으로만 구성된 유자격 가족에게 LINC I, II, III 및 VI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쉼터에서 LINC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거주지로 이동을 위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LINC IV 및 V 및 CITYFEPS에서는 이미 임산부로부터 구성된 가족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한을 해당 결정이 내려진 후 근무일 기준 5일에서 HRA가 해당 결정문을 발송한 후 근무일 기준 15일로 연장. (규칙안의 섹션 8, 12, 15 및 19 참조)
- 임대료에 난방 및 온수 요금이 포함됨을 명시. (규칙안의 섹션 9, 13 및 20 참조)

- LINC I, II 또는 II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될 거주지는 뉴욕 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 (규칙안의 섹션 10 참조) (LINC IV, V 및 VI와 CITYFEPS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기 규칙에는 이미 임대료 지원을 뉴욕 시에 소재한 거주지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칙안은 임대료 지원금액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많은 기술적인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섹션 4, 7 및 11 참조) 마지막으로, HRA는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제 7장 및 8장에 제 9장의 규정이 통합될 것이므로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제 9장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규칙안의 섹션 21을 참조)

뉴욕 주 사회보장 서비스법 섹션 34, 56, 61, 62, 77, 및 131과 뉴욕 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섹션 603 및 1043에 의해 HRA는 본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본 규칙안에 대한 주정부의 승인이 계류 중입니다.

밑줄 친 부분은 새롭게 작성된 부분입니다.
삭제된 문장은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1.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섹션 7-03 (a)항, (1)호, (B)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해당 가구에는 뉴욕 행정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표제 18의 섹션 369.2(c)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 또는 임산부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섹션 7-04 (a)항, (1)호, (B)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해당 가구에는 뉴욕 행정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표제 18의 섹션 369.2(c)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 또는 임산부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섹션 7-05 (a)항, (1)호, (B)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해당 가구에는 뉴욕 행정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표제 18의 섹션 369.2(c)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 또는 임산부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섹션 7-06 (a)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LINC I 및 LINC I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1) LINC I 또는 LINC I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1차년도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최대 임대료는 하기 표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해당 임대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RA가 각 건별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가 (i) 보조금 지원이 없는 민간 시장에서 유사한 유닛의 현 임대료 수준과 견주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인 경우, (ii) 해당 소유주가 소유한 비고급형 보조금 미지원 유닛의 현 임대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및 (iii) 동일 유형의 유닛에 대한 2014년도 뉴욕 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의 섹션 8 바우처 지급 표준(Section 8 Voucher Payment Standards)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단, HRA에서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가족이 본 항에 허용된 임대료로는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HRA는 재량에 따라 해당 가족 규모의 유닛에 맞는 2014년도 뉴욕 시 주

택국 섹션 8 바우처 지급 표준의 최대 130 퍼센트까지 최대 허용 임대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 HRA가 본 항에 따라 [이러한 예외를] 예외를 적용할 경우, HRA는 승인된 임대료와 하기 표에 규정된 최대 임대료 금액 간의 차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가구 규모	1	2	3	4	5	6	7	8
최대 임대료	<u>\$914</u>	\$1,028	\$1,200	\$1,257	\$1,428	\$1,542	\$1,599	\$1,714

(2) 인증 또는 갱신 시점의 해당 가구의 수입 중 30%의 프로그램 참여자의 분담금 이외에 본 장의 섹션 7-09, (l)항, (2)호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에 증가된 금액이 있을 경우 이 증가분이 본 항의 (1)호에 따라 결정된 해당 가구의 허용가능 임대료를 초과하면 이는 해당 가족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임대주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 분담금] 이러한 납부금은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결정하는 [본 항의 (1)호의 표에 명시된 최대 임대료 금액] 월 임대료에서 공제된다. HRA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가족이 자격을 유지하고 프로그램 자금이 계속 있을 경우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임대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단, 예외적으로 HRA는 재량에 따라 과거 DHS 컴퓨터로 사용된 유닛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대주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에 1년치 임대료 지원 지급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 이외에 본 장의 7-09조 (m)항 (2)호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5.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7-06 (b)항, (1)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LINC III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1) [하기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최대 [LINC III 임대료 지원금액] 및 LINC III 임대료 지원이 적용되는 [최대] 임대료는 하기 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해당 임대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RA는 각 건별로 최대 임대료 금액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가 (i) 보조금 지원이 없는 민간 시장에서 유사한 유닛의 현 임대료 수준과 견주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인 경우, (ii) 해당 소유주가 소유한 비고급형 보조금 미지원 유닛의 현 임대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및 (iii) 동일 유형의 유닛에 대한 2014년도 뉴욕 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의 섹션 8 바우처 지급 표준(Section 8 Voucher Payment Standards)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단, HRA에서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가족이 본 항에 허용된 임대료로는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HRA는 재량에 따라 해당 가족 규모의 유닛에 맞는 2014년도 뉴욕 시 주택국 섹션 8 바우처 지급 표준의 최대 130 퍼센트까지 최대 허용 임대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 HRA가 본 항에 따라 [이러한 예외를] 예외를 적용할 경우, HRA는 승인된 임대료와 하기 표에 규정된 최대 임대료 금액 간의 차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본 항의 (2)호, (D)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LINC III 임대료 지원금액은 하기 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구 규모	1	2	3	4	5	6	7	8
최대 임대료	\$914	\$1,028	\$1,200	\$1,257	\$1,428	\$1,542	\$1,599	\$1,714
최대 임대료 지원	\$637	\$745	\$800	\$807	\$927	\$1,018	\$1,053	\$1,168

§ 6.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섹션 7-06 (b)항, (2)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H) HRA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가족이 자격을 유지하고, 프로그램 자금이 계속 있을 경우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임대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단, 예외적으로 HRA는 재량에 따라 과거 DHS 컴퓨터로 사용된 유닛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대주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에 1년치 임대료 지원 지급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본 섹션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i) 임대료 지원 지급금 선수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ii) 해당 가구의 임대료 지원 금액이 임대료 지원 지급금이 미리 납부된 해에 본 항에 따라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차액을 HRA에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 지원 지급금이 선지급된 해에 해당 가족이 HRA에 차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HRA는 해당 가족으로부터 해당 차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 7.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섹션 7-06 (b)항, (3)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3) 만약 LINC III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수입이 증가하거나 뉴욕 행정규정 표제 18 섹션 369.2(c)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또는 임산부 여성이 더 이상 해당 가구에 속하지 않게 되어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가구 총수입의 30%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분담금뿐만 아니라 본 장의 섹션 7-09, (l)항, (2)호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에 증가된 금액이 있을 시 이 증가분이 본 항의 (1)호에 따라 결정된 해당 가구의 허용가능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이는 해당 가구가 부담하도록 하며 임대주에게 이를 매월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 분담금] 이러한 납부금은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결정하는 [본 항의 (1)호의 표에 명시된 최대 임대료 금액]월 임대료에서 공제된다. [HRA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가족이 자격을 유지하고, 가용가능한 프로그램 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임대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는 본 장의 섹션 7-09, (l)항, (2)호에 명시된 임대료에 증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해당 가구의 매월 프로그램 참가자 분담금과 임대료 지원금은 가구의 구성이나 수입액이 변경 되더라도 가구가 프로그램 현재 년도의 남은 기간 동안은 변경되지 않으며 해당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유지하는 한, 가구가 추후에 공공 지원을 받을 자격이 획득하게 되거나 뉴욕 행정규정 표제 18, 섹션 369.2(c)에 부합하는 아동을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되더라도 계속 이 호에 따라서 계산된다.

§ 8.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7-08 (m)항, (1)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 형식으로 HRA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는 공청회 판결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이 전달 된 후]을 HRA에서 발송한 후 근무일 기준 최소[5] 15일 이내에 HRA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공청회 기록,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문, 선서진술서, 서류 증거 또는 컴퓨터 주민 또는 LINC I 또는 LINC III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출하고자 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 9.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7-09의 (i)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j) LINC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는 가구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료 또는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임대료에는 난방 및 온수 요금이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한 임대주는 HRA의 모든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뉴욕 시가 관리하는 기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임대주를 부적격자 명단에 등재하기 전, HRA는 임대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 10.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7-09는 다음과 같이 (m)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됩니다.

(m) LINC I, LINC II 및 LINC III 임대료 지원은 뉴욕 시 외에 소재한 거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1.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7-14의 (a)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아파트 임차.

(1) LINC IV 또는 LINC V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이러한 혜택을 이용 중인 가구가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1차년도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최대 아파트 임대료는 하기 표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해당 임대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RA가 각 건별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가 (i) 보조금 지원이 없는 민간 시장에서 유사한 유닛의 현 임대료 수준과 견주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인 경우, (ii) 해당 소유주가 소유한 비고급형 보조금 미지원 유닛의 현 임대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및 (iii) 동일 유형의 유닛에 대한 2014년도 뉴욕 시 주택국의 섹션 8 바우처 지급 표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단, HRA에서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가족이 본 항에 허용된 임대료로는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HRA는 재량에 따라 해당 가족 규모의 유닛에 맞는 2014년도 뉴욕 시 주택국 섹션 8 바우처 지급 표준의 최대 130 퍼센트까지 최대 허용 임대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 HRA가 본 항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경우, HRA는 승인된 임대료와 하기 표에 규정된 최대 임대료 금액 간의 차액을 지불하도록 한다.

가구 규모	1	2	3	4	5	6	7	8
LINC IV 최대 임대료	\$1,028	\$1,028	\$1,200	\$1,257	\$1,428	\$1,542	\$1,599	\$1,714
LINC V 최대 임대료	\$914	\$1,028	\$1,200	\$1,257	\$1,428	\$1,542	\$1,599	\$1,714

(2) 인증 또는 갱신 시점의 해당 가구의 총 월수입 중 30%의 프로그램 참여자의 분담금 이외에 본 장의 섹션 7-17, (l)항, (2)호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에 증가된 금액이 있을 경우 이 증가분이 본 항의 (1)호에 따라 결정된 해당 가구의 허용가능 임대료를 초과하면 이는 해당 가족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매월 임대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과 같은 납부금은 월별 임대료에서 공제되어 월별 임대료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HRA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가족이 자격을 유지하고 프로그램 자금이 계속 있을 경우 월별 임대료 지원금을 임대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단, 예외적으로 HRA는 재량에 따라 과거 DHS 컴퓨터로 사용된 유닛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대주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에 1년치 임대료 지원 지급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 이외에 프로그램 참여자는 본 장 제7-17조 본 장 (1)부속조항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

§ 12.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7-16의 (m)항, (1)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 형식으로 HRA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는 공청회 판결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이 전달 된 후]을 HRA에서 발송한 후 근무일 기준 최소[5] 15일 이내에 HRA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공청회 기록,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문, 신청서, 서류 증거 또는 노숙자 성인 또는 LINC IV/LINC V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출하길 원하는 서면 의견서로 구성된다.

§ 13.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7-17의 (h)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h) LINC IV 혹은 LINC V 임대료 지원을 받는 가구와 임대차 혹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주 혹은 1차 임차인은 가구 구성원이나 소득의 변화와 관계없이 임대료 혹은 리스나 임차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금전이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요구, 청구 혹은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임대료에는 난방 및 온수 요금¹이 포함된다. 임대료 혹은 리스나 임차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금전이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요구, 청구 혹은 수령한 임대주 혹은 1차 임차인은 HRA의 모든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뉴욕 시가 관리하는 기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임대주 혹은 1차 임차인을 부적격자 명단에 등재하기 전, HRA는 임대주 혹은 1차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고 서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14. 뉴욕 시 규칙 표제 68의 섹션 7-20 (a)항, (1)호, (B)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B) 해당 가구에는 뉴욕 행정규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표제 18의 섹션 369.2(c)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녀 또는 임산부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7-23 (m)항, (1)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 형식으로 HRA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는 공청회 판결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이 전달 된 후]을 HRA에서 발송한 후 근무일 기준 최소[5] 15일 이내에 HRA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공청회 기록,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문, 신청서, 서류 증거 또는 보호소 거주자 또는 LINC VI 프로그램 참가자가 제출하고자 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 16.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8-05의 (a)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 본 섹션[의 (g) 및 (h)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섹션 8-03 또는 8-04, (a)항, (2)목에 의거한 승인 시점에, 최대 CITYFEPS 임대료 지원금액 및 CITYFEPS 임대료 지원금이 적용될 최대 임대료는 하기 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구 규모	1	2	3	4	5	6	7	8
최대 임대료	\$1,213	\$1,268	\$1,515	\$1,515	\$1,956	\$1,956	\$2,197	\$2,197
최대 CITYFEPS 임대료 지원금	\$936	\$985	\$1,115	\$1,065	\$1,455	\$1,432	\$1,651	\$1,651

§ 17.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8-05의 (j)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H) HRA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가족이 자격을 유지하고, 가용 자금이 남아있을 경우, CITYFEPS 임대료 지원금을 임대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한다. 단, 예외적으로 HRA는 재량에 따라 과거 DHS 셉터로 사용된 유닛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대주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에 일년치 임대료 지원 지급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본 섹션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i) 임대료 지원 지급금 선수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ii) 해당 가구의 임대료 지원 금액이 임대료 지원 지급금이 미리 납부된 해에 본 항에 따라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차액을 HRA에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 지원 지급금이 선지급된 해에 해당 가족이 HRA에 차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HRA는 해당 가족으로부터 해당 차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해당 가구는 프로그램 참여자 분담금뿐 아니라 본 장에 따라 허용된 임대료 증가분을 부담해야 한다.]

§ 18.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8-05는 다음과 같이 (k)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됩니다.

(k) 본 섹션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가족이 본 항에 허용된 임대료로는 90일 이내에 거주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HRA는 재량에 따라 본 항에 따라 CITYFEPS 임대료 보조금이 적용될 최대 임대료를 해당 가족 규모의 유닛에 적절한 2014년도 뉴욕 시 주택국 섹션 8 바우처 지급 표준의 최대 130 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 19.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8-08 (m)항, (1)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 형식으로 HRA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는 공청회 판결문과 함께 발송된 통지문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공청회 담당관의 판결[이 전달 된 후]을 HRA에서 발송한 후 근무일 기준 최소[5] 15일 이내에 HRA에 의해 수령되어야 한다. HRA 국장 앞으로 제출될 기록은 해당 공청회 기록, 공청회 담당관의 결정문, 선서진술서, 서류 증거 또는 해당 신청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출하기를 원할 경우 서면 의견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 20.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섹션 8-09의 (e)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e) CITYFEPS 임대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와 아파트 임대차 또는 기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는 가구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또는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임대료에는 난방 및 온수 요금이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한 임대주는 HRA의 모든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뉴욕 시가 관리하는 기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임대주를 부적격자 명단에 등재하기 전, HRA는 임대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 21. LINC I, LINC II, LINC III, LINC IV, LINC V 또는 CITYFEPS 프로그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가구에 대한 증가된 최대 임대료 및 임대료 선지급에 대한 뉴욕 시 규칙 표제 68, 제 9장은 폐지됩니다.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뉴욕 시 헌장 §1043(d)에 근거한

인증 절차

규칙 표제: 임대주 지급금 및 대가족 대상 임대료 보조금 증가(영구 규칙)

참조 번호: 2015 RG 087

규칙 제정 기관: 인적자원관리국

본인은 인적자원국에서 뉴욕 시 헌장 제1043(d)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을 검토하였으며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i) 상기 규칙안은 법적 근거가 되는 해당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 (ii) 다른 준거 규칙과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 (iii)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위를 집약하였으며,
- (iv)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규칙과 규칙이 설정하는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상황과 목적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명/ STEVEN GOULDEN

날짜: 2015년 8월 17일

뉴욕 시 변호인 대행

뉴욕 시 시장 운영실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d)에 근거한
확인/분석

규칙 표제: 임대주 지급금 및 대가족 대상 임대료 보조금 증가(영구 규칙)

참조 번호: 2015 RG 087

규칙 제정 기관: HRA

본인은 본 사무실에서 상기에 언급된 규칙안을 뉴욕 시 헌장 섹션 1043(d)의 규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증합니다. 상기 규칙안은

- (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 (ii) 각 해당 지역사회에서 명시된 본 규칙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 (iii) 본 규칙안에는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처벌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 기간(cure period)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명/ Francisco X. Navarro
뉴욕 시 시장 운영실

2015년 8월 18일
날짜